

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

판 결

사 건 2008가단23414 보험금
원 고 1. 이 [REDACTED]
2. 이 [REDACTED]
원고들 주소 시흥시 정왕동 [REDACTED]
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백
담당변호사 송인백
피 고 [REDACTED] 주식회사
서울 종로구 [REDACTED]
대표이사 김○○
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희, 이현석
변 론 종 결 2008. 9. 2.
판 결 선 고 2008. 9. 30.

주 문

1.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,5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05. 3. 19.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%의,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%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피고는 2003. 3. 31. 소외 망 이○○(이하 ‘망인’이라고 한다.)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,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법정상속인, 보험기간을 2003. 3. 31.부터 2008. 3. 31.까지로 각 정하여 망인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할 경우 보험금 5,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‘으라차차운전자보험Ⅱ’ 보험계약(이하 ‘이 사건 보험계약’이라고 한다.)을 체결한 보험자이다.

나. 망인은 2008. 3. 19. 09:40경 광주시 목현리 소재 ○○상사 내를 걸어가다 소외 박○○ 운전의 지게차(이하 ‘이 사건 지게차’라고 한다.)에 충격 당하여 현장에서 사망하였는데(이하 위 사고를 ‘이 사건 사고’라고 한다.), 박○○은 당시 위 지게차에 물건을 적재한 후 이동중이었다.

다.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교통상해담보 특별약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.

0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아래에 정한 사고(이하 ‘교통사고’라고 합니다.)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경우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.

3. 피보험자가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용구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, 운행중

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승용구(적재물을 포함합니다.)와의 충돌,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교통승용구의 충돌, 접촉,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(이하 '비탑승중교통사고'라고 합니다.)

0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(자동차의 종별구분)에 정한 자동차(승용자동차, 승합자동차, 화물자동차,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등을 말합니다.)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(건설기계의 범위)에 정한 덤프트럭, 타이어식 기중기, 콘크리트 믹서트럭,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,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, 타이어식 굴삭기(이하 '6종 건설기계'라고 합니다.)를 말합니다. 다만,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.

0 기타교통승용구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.

4. 6종 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(다만,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기타교통승용구로 보지 아니합니다.)

0 회사는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.

4.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고 있는 동안 발생한 손해라.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로서 망인을 상속하였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4호증, 을 제1호증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주장 및 판단

가. 당사자들의 주장

원고들은,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보험약관 소정의 기타교통승용구에 의한 비탑승중 교통사고이므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보험금 각 2,500만 원 및 그

자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, 이에 대하여 피고는, 위 사고 당시 위 지게차는 작업기계로 사용된 관계로 위 약관 소정의 기타교통승용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위 사고는 위 약관 소정의 교통사고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.

나. 판단

(1) 살펴건대, 이 사건 지게차가 이 사건 보험약관 소정의 건설기계에 해당함은 관계 법령의 해석상 명백하므로, 이 사건 사고가 위 약관 소정의 비탑승중교통사고에 해당되어 피고의 보험금지급의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위 지게차가 위 약관 소정의 기타교통승용구인지 여부 즉 작업기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. 한편, 건설기계는 그 수행하는 작업의 특성상 작업기능과 교통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은데, 단순히 장소의 이동이 있다 하여 위 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고, 그 구조 및 용도, 구체적인 작업의 내용 등에 비추어 위 기계가 작업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교통기능을 수행하였다고 판단되면 이는 작업기계로 사용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.

(2) 이에 따라 이 사건 사고를 살펴보면,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, 위 사고의 장소가 일반도로가 아닌 작업장 내인 점, 위 사고 당시 이 사건 지게차는 물건을 싣고 운반중이었던 점, 위 지게차는 그 작업의 성질상 작업기능과 교통기능을 함께 수행할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, 위 지게차는 위 사고 당시 작업기계로 사용되고 있어 위 약관 소정의 기타교통승용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. 따라서 위 사고는 위 약관상 기타교통승용구에 의한 비탑승중교통사고로 볼 수 없으므로,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.

3. 결 론

그렇다면,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조중래 _____

* 전자우편 등을 통한 판결문 제공에 관한 예규 제6조 및 전자우편 등을 통한 판결문 제공에 있어서의 비실명화 기준(대법원행정예규 제712호)에 의하여 판결문 내용 중 이름, 주민등록번호, 주소 등 소송관계인의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 삭제되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